

송도역 경남아너스빌 입주자 모집공고

※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 청약Home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및 스마트폰 또는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홈페이지(http://www.송도역경남아너스빌.com)의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 아파트는 2022.12.29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적용되며,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주택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※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.01.06. 입니다.(청약자격요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입니다.)
※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)

1.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, 감리회사 현황

■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			
구 분	시행사	시공사	
상호	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	주식회사 우방	에스엠하이플러스 주식회사
법인등록번호	120171-0004907	170111-0352732	131111-0191187

■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				
구 분	건축	전기	통신	소 방
회사명	(주) 휴먼테크리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	(주) 지어이앤씨	(주) 지어이앤씨	(주) 지어이앤씨
감리금액	788,979,400	265,100,000	58,850,000	58,850,000
사업자등록번호	215-81-73365	108-81-79867	108-81-79867	108-81-79867

2. 공급일정

구 분	특별공급 (기관추천, 다자녀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, 생애최초)	일반1순위	일반2순위	당첨자발표	계약체결
일 정	2023년 1월 16일(월)	2023년 1월 17일(화)	2023년 1월 18일(수)	2023년 1월 27일(화)	2023년 02월 07일(화)~02월 09일(목) 3일간
방 법	인터넷 청약 (09:00 ~ 17:30)			개별조회 (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)	견본주택 방문계약 (10:00 ~ 17:00)
장 소	• 사업주체 견본주택 •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 앱 •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	•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 앱			• 당사 견본주택 구비서류 등 지침 방문 •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견본주택 (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29-3) ※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※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첨자에 한해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.

※ 스마트폰 : 구글플레이스토어, 애플 앱스토어에서 「청약홈」 검색
-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, 금융인증서,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
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주택과-465호(2023.01.04)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
- 공급위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-17번지 일대
-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 2층, 지상 20층 3개동 총 218세대 중 일반분양 110세대, 조합원 106세대 (공급면적 81.5071㎡ : 47세대, 공급면적 101.0277㎡ : 59세대), 보류세대 2세대(공급면적 81.5071㎡ : 2세대) [특별공급 58세대(일반기관추천) 11세대, 다자녀가구 11세대, 신혼부부 22세대, 노부모부양 3세대, 생애최초 11세대 포함] 및 부대복리시설
- 입주시기 : 2025년 06월 예정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- 공급대상

주택 구분	주택 관리번호	모델	주택형 (전용면적기준)	약식 표기	주택공급면적(㎡)			기타 공용면적 (지하주차장등)	계약 면적	세대별 대지비율	총공급 세대수	특별공급 세대수						일반공급 세대수	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	
					주거 전용면적	주거 공용면적	소계					기관 추천	다자녀 가구	신혼 부부	노부모 부양	생애 최초	계			
민영 주택	2022000911	01	059.9800	59	59.9800	21.5271	81.5071	37.9550	119.4621	33.3875	110	11	11	22	3	11	58	52	9	
합 계												110	11	11	22	3	11	58	52	9

■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

타입	층별	세대수	분양가			계약금(10%)						중도금(60%)						잔금(30%)	
			대지비	건축비	계	1차	2차	1회	2회	3회	4회	5회	6회	입주지정일	입주지정일				
59	1층	6	68,476,000	367,924,000	436,400,000	10,000,000	33,640,000	43,640,000	43,640,000	43,640,000	43,640,000	43,640,000	43,640,000	43,640,000	43,640,000	130,920,000			
	2층	9	68,476,000	373,024,000	441,500,000	10,000,000	34,150,000	44,150,000	44,150,000	44,150,000	44,150,000	44,150,000	44,150,000	44,150,000	44,150,000	132,450,000			
	3층	9	68,476,000	378,024,000	446,500,000	10,000,000	34,650,000	44,650,000	44,650,000	44,650,000	44,650,000	44,650,000	44,650,000	44,650,000	44,650,000	133,950,000			
	4층	5	68,476,000	383,024,000	451,500,000	10,000,000	35,150,000	45,150,000	45,150,000	45,150,000	45,150,000	45,150,000	45,150,000	45,150,000	45,150,000	135,450,000			
	5-9층	29	68,476,000	388,024,000	456,500,000	10,000,000	35,650,000	45,650,000	45,650,000	45,650,000	45,650,000	45,650,000	45,650,000	45,650,000	45,650,000	136,950,000			
	10-15층	38	68,476,000	393,024,000	461,500,000	10,000,000	36,150,000	46,150,000	46,150,000	46,150,000	46,150,000	46,150,000	46,150,000	46,150,000	46,150,000	138,450,000			
	16-20층	14	68,476,000	398,024,000	466,500,000	10,000,000	36,650,000	46,650,000	46,650,000	46,650,000	46,650,000	46,650,000	46,650,000	46,650,000	46,650,000	139,950,000			

4. 특별공급 신청자격

■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· 주택형별 공급세대수				
구 분 (약식표기)	59	합 계		
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	국가유공자	2	2	
	장기복무 제대군인	2	2	
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1	1	
	중소기업 근로자	2	2	
	장애인	인천광역시	2	2
		서울특별시	1	1
		경기도	1	1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인천광역시 (50%)	6	6	
	서울특별시·경기도 (50%)	5	5	
	신혼부부 특별공급	22	22	
	노부모부양 특별공급	3	3	
	생애최초 특별공급	11	11	
합 계	58	58		

■ 특별공급 공통사항

구 분	내 용
1회 한정/ 자격제한	•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) 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 •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,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•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.
무주택 요건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. ※ 소형 ·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※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(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)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[계약체결 불가,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'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'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촉지역 3개월(공급신청지역은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당첨 제한] - 기관추천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-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주 요건
청약자격 요건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. - 기관추천 특별공급(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) / 신혼부부 특별공급 /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※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- 노부모부양 /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※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.

구 분	내 용
일반 (기관추천)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. (단,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로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) ※ 소형, 자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함 ※ 청약자격요건 :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※ 추천기간 -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: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/ 장애인 : 인천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,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,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/ 장기복무 제대군인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/ 중소기업 근로자 :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조정협력과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기타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)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(태아 포함)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,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
신혼부부 특별공급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기타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)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)으로서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※ 단,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.12.11.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,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. ※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신청주택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)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기타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)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(미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) ※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※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미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 제6호 미적용)
생애최초 특별공급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기타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)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(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)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서 「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※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※ 당 사업지는 전 세대 전용 60㎡ 이하 주택형으로 단독세대 신청이 가능합니다.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(과거 1년 내 소득세(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)를 납부한 자를 포함)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. 단,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(미혼인 자녀(입양)를 포함,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)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* (1인 가구)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(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) 미혼인 자녀(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)도 없는 신혼부부 * 1인 가구는 추첨제에만 청약가능하며, 단독세대(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)의 단독세대가 아닌 자료 구분하며,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(분양권 포함) 구입, 상속, 증여, 인출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주택(분양권 등)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. ※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(분양권 포함)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으나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, 생애최초 자격 부여(단, 53조 제9호의 소형자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) ※ '소형' 자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, 세대원 중에 소형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음. ※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산정 시 소득산정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(당첨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

5. 일반공급 신청자격

구 분	내 용
신청자격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, 기타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)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중 입주자저축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(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제외)국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(포함)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. •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서,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.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청약예금·예치금 200만원 이상 납입할 것 ② 만 19세 이상 또는 미성년자 세대주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

■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			
구분	순위	주택형	청약관련 신청자격
민영 주택	1순위	전용 85㎡이하	전용면적 85㎡ 이하 : 가점제 (40%) 및 추첨제 (60%) 적용,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.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. (가점제 점수)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잔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.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잔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.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신청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.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
			청약제한 대상자
2순위	전 주택형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(포함)에 가입한 자	

■ 민영주택의 청약예치기준금액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[별표2]			
[청약예금의 예치금액]			
구 분	인천광역시	서울특별시	경기도
전용면적 85㎡ 이하	250만원	300만원	200만원

6. 발코니 확장

■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일정			
주택형	발코니 확장금액	계약금(10%)	잔금(90%)
		계약 시	입주지정일
59	16,500,000	1,650,000	14,850,000

7.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내용

■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.	
구 분	내 용
보증서 번호	제 03412022-101-0000900 호
보증 금액	금 삼백오십일억이천이백팔만원정 (₩ 35,122,080,000)
보증 기간	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(복리사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)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(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)까지

※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, 의문사항에 대하여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회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이다)

■ 분양문의 : 032-882-0120

HONORSVILLE
송도역 경남아너스빌

총 218세대 중
일반분양 59㎡ 110세대

분양문의
032) 882.0120

모델하우스 위치 |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629-3

시 행 이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 공 이 SM(우)방 SM 에스엠하이플러스(주) 광고대행 | 주식회사 디펜